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45 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이인영・이학영・전용기

박상혁 • 이정문 • 김용만

이기헌 · 장철민 · 김동아

김성회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 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 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 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중 "제1항부터 제4항"을 "제1항부터 제5항"으로 한다.

④ 「대・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수탁기업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생협력 우수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생협력우수기

업등이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3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	제8조의3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
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 ①	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
	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
	따른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
	선정된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
	22조의2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
	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조
	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
	는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
	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
	다. 다만, 조정된 납품대금을
	지급받은 수탁기업이 해당 내
	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그러하
	<u>지 아니하다.</u>
<u>④</u> ~ <u>⑦</u> (생 략)	<u>⑤</u> ~ <u>⑧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7
	항까지와 같음)
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	<u>⑨</u> 제1항부터 제5항
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	

다.